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부 3.0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1. 한약(생약)제제 중 신약 및 일부 자료제출의약품에 대한 독성시험 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하고, 유해물질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을 강화하는 등 한약(생약)제제의 안전성 및 품질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을 불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유관 단체 및 협회에서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고시에 대한 세부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임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끝.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신자 6개 지방청장(52개 전부서), 본부(49개 전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처(40개 전부서), 보건복지부장관(약무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한약정책과장), 대한약사회회장, 대한한약사회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제약협회장,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 한국약제학회장

주무관 오세욱 행정사무관 서동훈 한약정책과장 전격 2016. 10. 10. 김영우

협조자

시행 한약정책과-4389 (2016. 10. 10.)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정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한약정책과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357 팩스번호 043-719-3350 / oscar96@korea.kr / 대국민 공개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로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니다.